

실로 철학에 맞는 원칙확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높은 창의력을 강력히 뒤밀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는 사회를 밀고 나가는 「비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비존」을 잃은 사람을 건축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먼저 건축가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비존」을 쟁취하여야 하며 상호협력을 위한 굳은 선의의 단결이 요청되며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의의 파워가 요청된다.

이를 행정에서도 밀어 올려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감동적인 새로운 장이 하루속히 출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요망하고 있기에 건축가들에게 짙어진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앞날은 엄청나게 험준하다.

그러기에 건축가의 올바른 상을 스스로가 찾고 건축가와 사회인과 관과의 뜨겁고 진지한 협력태세가 오늘 절실히 요청된다. 내일이면 너무나도 늦어 한국 건축문화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이 중요하고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업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 設計事務所運營上の 当面問題

金 枝 泰

우리나라의 建築文化의 一翼을 담당하고 또한 自負하며 建築創作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있는 建築家들이 그 業務에 負課된 使命感과 姿勢에서 얻는 結果에 對하여 虛와 實이 어떤것인가를 實感했을때 마치 明滅하는 燈과 같이 錯雜한 心情과 함께 現在에 어느位置에 와있는가를 짐작케 될 것이다.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 建築家들의 自覺과 協同精神의 不足으로 自招한 것인가 아니면 現建築行政 및 政策의 制度上의 不備로 因하여 생긴 現象인가, 또는 一般大衆들의 建築創作에 關한 理解不足으로 活動舞台를 잃고 있는 것인가, 左右間 우리 建築家들로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如地에 있는 것이다. 보다 밝은 來日을 위하여 水準높은 創作活動과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本然의 業務에 誠實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體를 再整備하는 一便 돌고있는 軌道의 修正이 不可避한 時點에 와있다고 본다.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 設計事務所의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이를 運營하고 있는 建築家(法的用語 해석으로 登錄開業한 建築家를 建築士로 稱함)에 있어 現在 當面하고 있는 諸般問題中에서 가장 切實하고도 早速한 解決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問題들로서 果然 어떤것들이 있는지 이를 露呈시켜 이에 對한 忌彈없는 意見交換과 對話를 通해서 問題解決의 지름길이 摸索되었으면 한다.

### 1. 設計事務所의 實態(概括的인 面에서)

組織體制側面에서 建築創作的인 部門과 建築技術的인 部門을 그 業務의 基本으로 하고 있는 建築設計業務가 우리나라에 定着한것은 歷史적으로 짧다고 보며 하나의 組織形態로서 社會的인 認知를 받게 된것은 아마도 1963年의 建築士法公布以後이며 當時의 建築家들에게 社會的으로 多少간에 待遇를 받을 수 있는 重要한 契期라 할 수 있고

그後 많은 試鍊을 겪어가면서 오늘과 같은 樣相의 組織體制로 成長變貌하였으나 社會發展度에 比하면 內容에서의 落後性은 免치못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設計事務所의 組織形態를 企業形式으로 区分하면 法人體制(株式會社)와 個人形態이며 이중 85%以上이 1人經營體制方式을 扞하고 있다. 從業員數도 資料에 依한바 設計事務所 全體數에 比하여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名 以上の 組織規模의 큰 事務所를 비롯하여 그中間規模로서 10~20名정도 小規模로서 5~7名 정도이고 이밖에 4人未滿의 事務所도 相當히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断面에서 一般企業과는 比較될 수 없지만 組織規模의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한 實情이며 經營形態도 1人體制를 쉽게 탈바꿈할 수 없는 要因이 尙今도 潛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伝來의 徒業制度가 存続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고 하겠다.

經營的側面에서... 建築設計事務所의 特殊性은 市場이란 流通構造를 갖고있는 一般生産經營體制와 같은 計劃生産方式을 扨할 수 없는 即計劃受註活動이 어려운 體質의인 虛弱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必要에 依하여 業務가 發生되므로 經營上의 收益性은 浮動的이고 實際로 樂觀도 悲觀도 아닌 狀態에 있으며 經營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受註量確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各種 手段方法이 動員되고 甚한 것은 一般大衆들의 印象 흐려놓는 熾烈한 競争뿐인가 더러는 建築界의 秩序를 흔들어놓는 事例가 非一非再하고 特히 最近과 같이 經濟的인 不況에서는 業務量減少로 經營面에 적지않이」 圧迫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問題는 受註의 起伏이 甚한 收益性을 設計事務所의 發展과 安定化를 遲延시키고 있으며 그間的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伸張速度에 比하여 設計事務所의 發展速度는 너무도 微微하고 오히려 踏歩狀態에 머무르고 있지않나 하는 憂慮조차 드는 것이다. 물론 이 收益性의 不安定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만 阻隘要因中的 하나로서 比重이 크고 이에 따른 改善策이 研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建築造形文化의 社会的인 莫重한 責任을 지니고 現在 우리나라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는 建築家(士)에 있어 共通關心事일뿐만 아니라 어떤 次善策이 마련되지 않을때 運營上 支障을 招來할지도 모를 當面問題에 對하여 大體로 두가지로 分離하겠다.

첫째는 建築에 關한 政策的인 次元에서다. 未解決의 問題들로서 報酬料率의 現實化, 所得標準의 引下, 合同事務所關係, 建築行政上의 審議制度의 改善, 建築抑制措置解除, 建築許可制度의 改善, 工事監理制度의 再檢討等이 이고, 둘째로는 建築家自身の 自律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問題들로서 事務所의 體質改善, 補助士確保 受註競争에 따른 덤핑行爲防止, 建築家の 品位保全등의 確立, 問題들이 있으며 이러한 諸問題中에서 重點的인 問題에 對하여 概論코져 한다.

#### ● 報酬의 現實化

建築家は 그 業務에 따른 勞苦의 代價로서 委託者(建築主)로부터 「報酬」를 받는다.

이 報酬란 말을 달리 表現하면 設計費 또는 用役費라고도 한다. 어떤 名目이던간에 이 報酬는 事務所經營의 絶對的인 原動力인 同時에 收益금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지만 問題는 現在 適用되고 있는 建設部認可의 報酬料率이 認可當時(1975年)의 社会余件과는 判異하게 變動된 今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適合하도록 이에 手術이 加해져

야만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持續的인 高度의 經濟的成長은 社会 各分野에 많은 發展을 가져왔다고 보지만 그 反面에 밀어닥친 物價의 暴騰과 引上된 人件費 및 税金의 波高는 事務所經營收支面의 均衡이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그 影響이 크게 미치고 있는 實情인데도 不拘하고 唯獨히 建築設計報酬料率만이 움직일 줄 모르는 木石처럼 變動이 없는 것이다. 勞賃도 激動하는 社会潮流에 敏感하게 反映되고 있는 點으로 보더라도 現實에 適合한 報酬料率이 速히 策定되어야 하겠으며 한便 經營上 密接한 關係가 있는 稅制面의 狀況은 어떠한가? 現行施行되고 있는 建築實(士)와 課稅所得標準率(27%)은 他的 技術用役部門(18%)에 比하여 높게 策定되어 있는 것으로한다. 引下調整코져 大韓建築士協會에서는 每年度마다 稅務當局과 數次에 걸쳐 協議한바 있으나 어떠한 事情인지 아직도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바라건데 他部門과 같은 程度로 調整이 되어야 할 것이며 現實的으로 設計事務所는 對内外로 어려운 形便에 놓여있는 것이다. 報酬料率은 現實을 外面한 低率이고 課稅所得標準率은 事務所實情을 外面한 高率이고 보면 結局은 設計事務所의 經營難을 招來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經營難은 結果的으로 事務所의 不實化를 가져온다는 것은 自明한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事務所의 本來業務에 正進하고 아울러 꾸준한 技術開發研究로 社会에 寄与度를 높일 수 있도록 問題에 따른 改善策이 특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補助士의 確保

士法改正前에는 設計事務所에 勤務하는 從業員(設計士, 製圖士)을 通稱 補助員이라 하고 근무에 필요한 어떠한 資格規定이 있었든것도 아니다. 그러나 1977年 士法改正으로 設計事務에 組織構成要件에 補助士(設計士)를 두도록 規定하고「補助士는 設計事務所에 所屬하여 建築士業務를 補助하는者」라고 그 職能을 明示할뿐더러 이에 必要한 資格余件까지 規定해 놓았다. 이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생각할때 專門職의 養成과 人力確保라는 問題解決의 一石二鳥의 方法도 될수있고 한便으로는 그들에게 國家社会에 對한 價值觀을 심어주고 補助士로서의 衿持와 自負心을 갖도록 할뿐더러 設計事務所의 勤続年限에 따라 建築人으로서의 大成의 길을 마련한 것으로서 晚之時嘆은 있지만 이는 建築政策的인 制度上 刮目할만한 進展이라 하겠다.

그러나, 法施行에 앞서 補助員의 實態를 좀더 把握하여 이에 따른 不足人員에 對한 對策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한 準備가 되어있지 못한데서 問題를 惹起한 것이 最近에 改正된 士法에 依한 事務所登錄關係에서 補助士의 不足現象이 바로 이것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人員不足現象의 要因을 파고들면 첫째는 轉職率이 甚한데 있는 것이 設計事務所에 對한 該들自身の 將來性에 對한 一種의 不安感으로 轉職하고 둘째는

設計事務所의 補助員에 對한 待遇가 一般企業에 比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自己職業에 不滿스러워 離職하는 一般的인 動機라 생각되는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하나의 專門技術人을 養成輩出한다는 것은 一般製品生産하듯 多量으로 生産할 수 없는 特殊한 性格을 지니고 있으니만큼 良質의 人材를 얻는 데는 올바른 技術指導와 養成에 따른 訓練期間 및 精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設計事務所의 人力難은 當分間 持續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事務所組織과 運營上에 支障을 招來할지도 모르므로 現在 처해있는 余件下에서 이에 對한 研究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그렇다고 無理한 스카웃 方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相互間의 維持를 위해서도 止揚되어야 한다.

● 合同事務所の 方向

士法改正으로 住宅과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의 設計業務는 合同事務所만이 處理하도록 되어 있다. 從前에 生覺치도 못했던 事態로서 이는 建築政策의 制度上으로 볼 때 一大改革이라 할 수 있고 또한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도 이러한 制度的인 것이 있는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左右間 設置에 따른 結果는 後日에 보기로 하고 먼저 合同事務所에 關한 事項이 法에 反映된 背景은 1976年 6月부터 施行된 住宅建築節次改善案(國務總理 指示 第 8号)에 따른 建築士連署(3人以上) 責任制實施가 그 바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體制面의 歴史的으로 한 페이지를 이룩할 이 合同事務所에 對하여는 너무나도 安逸하게 내다보았는지 또는 充分한 研究檢討가 없어서 그런지 現實的인 狀況이 參酌이 잘 되지 않는 체 法公布를 본 然後에야 이에 뒤따른 問題가 꼬리를 물고 胎頭된 實定으로 미루어 그 事態를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最近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合同事務所 하면 依例히 法律(弁護士), 稅務士, 可法書士의 獨點業이 되 있었으나 이제는 建築設計事務所도 그 範疇에 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言語의 浬앙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現在는 別로 거슬리지 않는다. 그 分들의 業務內容은 個性的으로 強한 創作業務와 다르므로 體制面이나 또는 運營上의 큰 問題가 別로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建築設計事務所는 單純業務와는 달리 複合的인 要素가 많은 即 創作과 技術을 土台로 하고 各分野別로 專門技術人의 協同을 必要로 하는 業務인 同時에 個人的 創作精神이 強하게 作用하는 特殊性이 있어 事務所組織面이나 運營上에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時代的인 潮流에 따른 體質改善에 槓桿이 늦고 있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法에서 規定한 合同事務所의 眞意를 내 나름대로 整理한다면 첫째로 漸次로 高度化되어 가고 있는 社會的 構造와

步調를 같이 하기 위하여 大型化되고 있는 建築物 設計業務를 統合의 體係로 갖추고 水準높은 次元에서 處理하는 能力을 쌓도록 하는 한편, 둘째 從來方式에 依한 個人的 經營形態를 止揚하고 事務所運營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는 企業形態의 方向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設使 法의 眞意가 이렇다고 보면 이를 育成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政策的이고도 制度的인 面에서 配慮가 있어야 할 텐데 (예를 들자면 稅制上의 支援, 技術開發研究을 위한 支援과 이에 關聯된 海外研修等) 不幸히도 漏落되고 만 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法上의 合同設計事務所를 外貌만 갖추고 內容이 없는 陳列藏의 마내경과 같고 오히려 業務處理에 法的責任만 加重되지 않았나 하는 疑具心만 있는 게 아니라 合同事務所가 아니면 創作의 自由活動에서 制限을 받게 되는 個人的 單獨事務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 方向設定이 잘못 된 것은 아닐런지 쉽게 納得이 안 되는 部分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初年生인 合同事務所問題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建築行政主務當局과 建築家의 權益을 위해 있는 關係三團體에서 再三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工事監理의 定着

建築設計事務所의 業務種目中에 베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工事監理業務이다. 法上定義는 「工事が 設計図書대로

實施되었는지 與否의 確認과 設計圖書에 表示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이 定하는 事項을 確認하는 行爲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換言하면 建築家(士)는 設計뿐만이

家(士)는 設計뿐만 아니라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고 設計圖에 依拠한 施工이 徹底하게 이룩되었는지의 確認을 하며 違反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工事施工者에게 注意를 喚起시켜도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建築主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工事監理者는 建築主側에서 不實工事が 되지 않도록 또 違反됨이 없도록 技術諮問과 協助를 아끼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監理業務의 運營의 妙를 살리지 못하면 도리어 工事監理者는 여러모로 処罰을 받게 되어 있어 監理業務를 着手할 때 그 遂行方向을 三段階로 設定해 놓고 첫째 確認, 둘째 指導, 셋째는 違反預防順으로..... 특히 이 業務의 重要한 點으로 미루어 徹底하고도 慎重하게 對處하지 않으면 設計事務所運營上에 予想밖에 많은 困辱을 치루게 되는 것이다. 法上 未備인지는 알 수 없으나 理解하기에 힘든 事項으로서 지적하자면 첫째 「確認」이라는 行爲인 것이다.

그 基準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따금 當惑할 때가 있다.

假令 鉄筋콘크리트工事に 關한 것을 確認하자면 그 自體의 構造的인 安全度에 限한 것인지 아니면 그 工事に 따른 全部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 確認部分에 對한 限界가

模稜한 것이다. 設令 全部를 包含한다면 問題는 달라진다. 왜! 確認하여야할 事項이 數없이 많기때문에 監理뿐만 아니라 檢収 및 檢査業務까지 勘當하여야할 形便이 되지 않을까한다. 둘째「施工方法」의 指導行爲도 解釈에 따라서는 工事監理者를 괴롭히는 要因이라 본다. 工事途中에 建築物의 어떤 問題가 發生되었을 경우 法的問題로 飛火된때 이를「施工方法의 指導」不良이고 그 歸責事由를 묻는다면 結果에 따른 解明이 通할 수 있을는지 憂慮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實際로 監理現場에서 施工上の 問題가 惹起되어 技術的- 解決方案을 提示해 주어도 工事監理에 對한 認識不足탓인지 아니면 施工者의 利害關係에 얽힌 탓인지 그 呼応 및 反應度가 바람직 못할때 그 实效性에 對하여는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이다. 委託받은 監理現場에서 法的인 違反事項이 없도록 事前에 予防하는 것이 工事監理者로서의 當然한 義務이고 한편 建築行政의 秩序를 維持시켜주는 役割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相對方의 協助가 先行되지 않으면 空念仏이 되고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實際로 違反하는 경우를 보면 施工者側보다도 오히려 一部建築主側에게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工事を 着手하면 狀況에 따라서는 當初의 建築許可事項을 合法的인 節次에 依하여 變更進行을 한다.

그러나 이런 節次로서 不可能한 때에는 目的達成을 위해 若干의 違反정도야 寬容받지 하며 서슴없이 進行하려고 할때 工事監理者는 死色이 되어서 說得과 理解를 求하면서 이를 予防하고 있는것이다. 勿論 違反事實이 發生하면 建築主가 누구이건 關係없이 關係當局에 即時 告發하면 工事監理者로서의 責任은 免責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極端의 手段이고 建築主와 工事監理者間에는 平素의 交分 및 受註關係가 形成되어있고 앞으로 持續되어야할 彼此立場이고보니 그러한 식으로 簡單히 處理할 수 없는 問題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近間에도 違反된 建築行爲로 말미암아 當局으로부터 制裁를 當한 建築主도 있겠지만 大部分은 工事監理者인 設計事務所인 것이다. 當局의 立場에서 볼때 工事監理者의 故意든 過失이든 이를 默認하였기때문에 이루어진 結果이므로 마땅히 이에 對한 責任을 져야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異議를 提起할 사람은 없겠으나 위에서 論한바와 같은 實情에서 계속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設計事務所의 苦衷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狀況으로 미루어 設計事務所의 前途는 多事多難할 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본다. 그렇다고 莫重한 法的責任을 져야할 工事監理業務의 報酬는 어떠한가?

非現實인 것이다. 現在에 適用되고 있는 報酬料率은 工事의 規模, 用途, 工期와 關係없을뿐더러 專門技術(電氣, 機械, 空調, 기타 등)을 必要로 하는 監理業務關係도 全혀 考慮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事項들을 參酌하고 또한

實質적으로 業務遂行에 支障이 없는 現實的인 報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工事監理에 따른 責任限界와 그 範圍 및 技術的인 處理方法에 關한 法的인 業務規定이 制定되어야 하겠다.

● 法改正의 빈도

우리나라의 數 많은 法中 建築에 關係되는 建築法이 있다. 現行의 建築法은 1962년에 制定公布를 奉後 그間에 社會發展度에 따라 6次나 改正을 보았고 施行令은 8次나 改正을 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改正될는지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이를 遵守하고 建築行政秩序를 確立시켜야할 建築家(士)의 立場이고 보면 빈번한 法改正公布에 어리둥절할 地境이다. 또한 早晚間에 改正되지않고는 不될理由로서 法自体가 時代적으로 不適合하고 適用의 不合理性으로 問題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建築技術의 向上과 새로운 資材의 出現 및 資材開發등으로 建築分野에 많은 發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法이란 그 社會余件에 따라 얼마든지 改正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그法의 改正作業過程에서 現實爲主인 近視眼의인 基準으로하는 것 보다는 좀더 巨視的인 眼目에서 改編 및 整備되어 円滑하게 運營이 되어야 하겠다. 現行의 建築法 施行令以外에도 各地方自治團體에서 制定된 條例, 規則등이 있는데 上位法인 母法과 施行令法보다 優位에 위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따금 問題가 있는것이다. 特히 地方條例와 같은 것은 適用上 特殊한 경우가 많고 解釈上의 差異도 問題를 야기시킬때에 적지아니 當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建築行政當局의 法運營의 未熟으로 建築許可節次에 따른 業務에 적지아니 支障을 가져다주고 이는 下位地方官署로 내려갈수록 處理能力의 水準差도 더욱 甚한것이다. 建築관계 行政官署의 担当者들이 法的 精神이나 概念 및 內容을 제대로 把握하지 않고서는 法運營의 妙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建築行政確立도 達成못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被害는 누가 입어야 하는가는 明白하여지는 것이다.

● 建築審議의 是非

서울의 경우 美觀地區 條例(1974年)에 근거하여 設置된 審議機構가 그 機能을 發揮하기 始作한지 벌써 5年이 되었다. 審議制度의 年輪으로 보아 設置目的에 違背됨이 없이 合理的으로 迅速하게 處理되고 建築行政制度의 改善은 물론 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論難의 對象이 되어 또한 物議가 紛紛한 것은 어이한 까닭인가? 그制度가 不滿스러워서가 아니라 委員會의 審議方式에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建築審議委員會에 申請建物을 提出해 놓고 審議結果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立場에서 심의 通過는 古捨하고 자주 返戻되면서 이에 따른 修正指摘事項內容이 首肯이 될수없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勿論 審

議에서 規制를 받을만한 事項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않고서야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해야할 委員會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말이된다. 假令 創作에 關한 일은 審議委員들의 趣味나 嗜好로 또는 權威를 위해서 審議過程에 多少라도 反映코져 하였다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일이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면 委員會의 決定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있는 것이다. 審議의 規準은 어디까지나 審議對象인 建築物이 都市計劃 및 建築에 關聯된 基本的인 事項을 規制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領域을 넘게되면 審議라기보다 오히려 設計를 委員들이 하고 있는셈이 된다. 이는 創作活動을 基本으로 하는 現業에 從事하는 建築家(士)들을 全적으로 不信任하는 印象을 줄뿐아니라 建築創作界의 混亂과 不作用을 自招하는 行爲가 되지않을지 알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斯界의 專門知識과 豊富한 經驗을 쌓은 委員들만으로 構成된 委員會에서 實質적으로 都市 및 建築問題를 社會發展의인 次元에서 이를 處理하고 있다고 보면 그 審議面에서 좀더 効率的인 方式으로 時間과 精神的인 負擔을 줄여주고 物質面에서의 必要以上の 費用을 減少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 審議의 對象物을 놓고 審議하는 委員이나 이를 作成 提出한 建築家(士)사이에 갈등과 硬直될 何等의 理由가 없다고 보면 좀더 和氣에 찬 對話와 相互理解 또는 協助로서 雜音에 따른 不作用을 얼마든지 解消시킬 수 있다고 본다. 設使 相反된 彼此의 立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建築에 關한 問題를 다루는 作業目標에서 明朗한 都市環境의 發展을 위해 共同으로 努力하고 있음은 分明한 事實이 아닌가 말이다.

● 맺는말

以上과 같은 建築設計事務所運營上의 当面問題中에서 重点이 될만한 問題들을 列拳하였으나 果然 이問題들이 現時點의 核心이 될만한 價值가 있는것인지의 眞否는 且置해 놓고 設計事務所를 運營하는 建築家(士)들에게는 肯定이 될만한 것들이라 보겠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의 實態는 그斷面에서 엿볼수 있듯이 그規模나 經營面 또는 設計體制面에서나 先進國과는 對比될 수 없는 落後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고 다만 当面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共通點은 建築政策上의 要望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樣相도 變遷하는 社會構造와 呼吸을 같이하기 위하여는 不得已하게 體質改善을 徐徐히 하지 않으면 앞될 地點에 와있는 것이라 하겠다. 從來方式에 依한 個人의 經營體制에서 보다. 有機的이고 能率的으로 組織化된 事務所經營體制의 方向으로 建築家(士)의 品位保全과 收益에 따른 發展을 阻害하는 情性的인 過當競爭에서 오는 덤핑行爲의 根絶, 創作活動과 技術開發研究을 위한 情報交換 및 海外研修와 良質의 技術人 養成 및 待遇改善등이 設計事務所를 現代化 시키는 길의 하나라 하겠다.

建築設計는 人間生活의 三要素인 衣, 食, 住의 하나와 關聯하고 또한 절박하게 必要로 하는 創作活動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設計事務所는 維持 되어야 한다.

## 行政側面에서 期待되는 建築像

金 永 哲

建築은 藝術의 一分野로서 美術分野에 屬하는 것으로 分類하고 있다.

우리가 藝術이라 함은 한마디로 사람이 自己의 感情, 像想, 느낌을 作品을 通하여 表現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感情, 느낌은 사람마다 環境에 따라 다르며 藝術作品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創造되는 것이므로 創作이라 한다.

이와같은 創作의 性格으로 보아 創作에 있어서 이어 從事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을 規制하거나 어떠한 基準을 設

定하는 등 行政的인 規制는 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事實上 現在 創作 活動에 對하여는 創作者的 權益에 保護하기 爲한 著作權法 以外에는 行政的인 面에서 特別한 規制를 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建築에 對하여는 建築士法, 建築法等에서 創作者的 資格, 創作의 基準等 많은 規制를 加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왜 많은 創作 分野中 唯獨 建築에 對하여서만 이러한